

【 9 】 접경지역지원법 관련 규제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

발의년월일 : 2001. 4. 25

발 의 자 : 김광배의원외 2인

□ 제안이유

- 우리 군은 군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이로 인한 규제는 물론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25.5%),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51.4%)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타 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낙후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등 사경제활동을 크게 침해 당하고 있어 이를 완화코자 함.

□ 주요골자

1. 접경지역의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접경지역은 제외 또는 특례를 인정하여야 함.
2. 접경지역에서 공장건축총량제를 폐지시켜 수도권의 상대적 불균형 발전을 시정.
3.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지역개발을 확대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전면 재검토 내지 규제가 대폭 완화.

〈접경지역지원법 관련 규제완화 건의문(안)〉

국정발전과 국토의 균형개발 및 국민복지수준 향상에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우리 양주군의회 의원 모두는 12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주군은 600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깃든 전통의 고장으로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며, 서울시와 인접되어 예로부터 정치·행정·군사적 요충지이나 남북분단의 지역적 특수성과 수차에 걸친 행정구역 개편으로 군세가 위축되고 발전의 속도가 둔화된 지역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간 우리 군은 군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인한 규제는 물론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25.5%),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51.4%)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타 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낙후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등 사경제 활동을 크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남북교류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경기 북부지역 성장거점 도시로의 육성을 선도해 나아갈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국가발전의 축이 되는 지역입니다.

2001년 1월21일 특별법인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어 이 지역 주민들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에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으나 접경지역지원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배제되지 않아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 취지와 입법 목적에 따라 지역특성에 걸맞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는 종전과 다를 바가 없어 지역

발전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공장건축총량제는 제조업의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으로 이는 접경지역 내에서 종합계획에 따라 공장을 신축·증축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 주는 접경지역지원법의 정책과도 상호 배치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접경지역은 5개 면에 224.02㎢이나 그중 57%에 해당하는 126.6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이 지역에서의 규제도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지원법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접경지역 개발 지원정책에 의한 낙후·소외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관련법 개정 등 제반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접경지역의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며, 4년제 대학등 교육시설의 입지 허용과 도시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함에 있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접경지역은 제외 또는 특례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2. 접경지역에서 공장건축총량제를 폐지시켜 활발히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여 수도권의 상대적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3.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지역개발을 확대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전면 재검토 내지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합니다.

양주군을 비롯한 한수이북지역이 남북분단의 지역적 특수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사회간접시설, 산업, 주민의 삶의 질등 제반 여건이 전국 평균수준에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했음에도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감내해 온 이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보상과 수도권의 불균형 발전 시정의 차원에서라도 위에 적시한 건의 사항이 국가정책에 반영·해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니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4월 30일

양주군의회의원 및 양주주민 일동

수신처 :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경기도지사,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